

#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주요 내용

## Construction Waste Recycling Promotion Act Revision



최원영 Won-Young Choi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전임연구원  
E-mail : wonyoungchoi@kict.re.kr

### 1. 개요

건설구조물 해체 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에는 다양한 성상의 이물질이 혼입된 혼합건설폐기물이 다량 발생한다. 혼합건설폐기물은 그 성상을 분별·분리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어 폐기물의 실질적인 재활용률을 저하시키고, 그 처리에 있어 엄청난 비용이 발생하는 등 사회적인 악순환의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의 일환인 분별해체 방식은 건설폐기물이 발생하는 초기단계에서부터 종류별, 성상별로 분리, 선별하여 배출하는 방식으로 현장에서 발생하는 혼합건설폐기물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일반적인 해체를 통해 얻는 폐콘크리트의 성상에 비해 이물질을 최소화한 폐콘크리트 확보가 가능해짐에 따라 고품질, 고부가가치의 순환골재의 생산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폐기물의 최종 처리비용의 절감 효과뿐만 아니라 분리하여 배출하기 어려운 혼합건설폐기물을 줄여 매립에 의한 환경오염을 저감하는 효과를 얻어낼 수 있다.

정부에서는 이를 위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배출자 등의 의무 규정에서 건설폐기물을 종류별, 처리방법별로 분리 배출하도록 규정하였으며, 동법 시행규칙 [별표 1] 에서도 철거공사 시에는 건설폐기물을 성상 종류별로 분리하여 배출하도록 규정하는 등 분리 배출에 대한 기준을 강화한 바 있다. 그러나 그 동안 혼합건설폐기물 발생량을 절감을 위해 혼합건설폐기물의 정의를 재정립하고, 분리배출 미 이행자에 대한 처벌기준 등은 규정되지 않았으며 이에 대한 개정의 필요성이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상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으로, 환경부에서 주관하여 2019년 까지 수행된 연구를 밑거름삼아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게 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2. 법률 개정의 주요내용

건설폐기물을 처리하여 생산한 순환골재의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일정한 구조, 규모 및 용도에 해당하는 구조물의 철거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건설폐기물을 분별해체하도록 하고, 건설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배출자가 건설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는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정하되, 이러한 범위를 벗어나 업무를 대신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처분 등을 통해 제재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다.

가. 건설폐기물 중 재활용이 가능한 건설폐기물과 재활용이 어려운 건설폐기물이 서로 섞이지 않도록 국가, 지

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일정한 구조, 규모 및 용도에 해당하는 구조물의 철거공사를 발주하는 경우에는 건설폐기물의 분별해체를 통해 분리배출하도록 함(제2조제12호의2 및 제4조제3항 신설).

나. 건설폐기물 배출자로 하여금 건설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는 업무를 건설기술용역을 수행하는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함(제18조제2항 신설).

다. 건설기술용역을 수행하지 아니하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건설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는 업무를 대행한 경우 대행하게 한 배출자와 대행을 수행한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에 대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제66조제1호의2 및 제1호의3 신설)

<법제처 제공>

[표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신구조문대비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781호, 2017. 4. 18., 일부개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317호, 2019. 4. 16.,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12. (생략)  <신설>  13. ~ 16. (생략)	제2조(정의) ----- -----  1. ~ 12. (현행과 같음)  12의2. "분별해체"란 구조물을 철거하기 전에 해당 구조물의 철거과정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 중 재활용이 가능한 건설폐기물과 재활용이 어려운 건설폐기물이 서로 섞이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폐기물을 우선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  13. ~ 16. (현행과 같음)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무) ①·② (생략)  <신설>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무)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구조, 규모 및 용도에 해당하는 구조물의 철거공사를 발주하는 경우에는 건설폐기물을 분별해체를 통하여 분리배출하게 하여야 한다.
제5조(발주자의 의무) ① (생략)  ② 발주자는 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분리배출, 보관, 처리 및 재활용 등에 필요한 비용을 공사금액에 계상(計上)하는 한편 재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공사시방서 등 계약서류에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제5조(발주자의 의무) ① (현행과 같음)  ② ----- 건설폐기물의 분별해체, ----- ----- 계상(計上)하여야 하며, 분별해체 기 간 및 그 밖에 ----- -----.
제6조(배출자 등의 의무) ① (생략)  ② 배출자는 건설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을 종류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처리방법별로 분리하여 배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배출자 등의 의무) ① (현행과 같음)  ② ----- 제2조 및 제13조에 따라 ----- -----.

<p>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781호, 2017. 4. 18., 일부개정]</p>	<p>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317호, 2019. 4. 16., 일부개정]</p>
<p>제8조(재활용기본계획의 수립) ① 환경부장관은 건설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적절하게 처리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 재활용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건설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적절하게 처리하기 위한 처리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3.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 제품의 생산·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연구개발 및 그 활용을 위한 시책 4.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생산과 수급에 관한 정보관리 5. 그 밖에 건설폐기물의 감량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삭 제〉</p>
<p>제11조(재활용 통계조사)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조사결과를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1. ~ 4. (생략)</p> <p>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와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제출받은 시·도지사는 이를 종합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제출받은 자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③ (생략)</p>	<p>제11조(재활용 통계조사) ① ----- -----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p> <p>1. ~ 4. (현행과 같음)</p> <p>② -----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p> <p>③ (현행과 같음)</p>
<p>제13조(건설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①·② (생략)</p> <p>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설폐기물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배출, 수집·운반, 보관 또는 중간처리 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건설폐기물의 배출, 수집·운반, 보관 또는 처리 방법의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p> <p>1. ~ 3. (생략)</p>	<p>제13조(건설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p> <p>1. ~ 3. (현행과 같음)</p>
<p>제18조(건설폐기물의 인계·인수 등) ① (생략)</p> <p>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를 작성한 자는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를 작성한 날부터 3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p>	<p>제18조(건설폐기물의 인계·인수 등) ① (현행과 같음)</p> <p>② 제1항 본문에 따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하는 자 중 배출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을 수행하는 자에게 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는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p>
<p>③ 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입력내용·방법·시기 및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의 작성방법·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p>〈신 설〉</p>	<p>③ 제1항 단서에 따라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를 작성한 자는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를 작성한 날부터 3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p> <p>④ 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입력내용·방법·시기 및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의 작성방법·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781호, 2017. 4. 18., 일부개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317호, 2019. 4. 16., 일부개정]
<p>제21조(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 등) ① ~ ⑥ (생략)</p> <p>⑦ 건설폐기물 처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p> <p>1. 2. (생략)</p> <p><u>&lt;신 설&gt;</u></p> <p>3. (생략)</p>	<p>제21조(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 등) ① ~ ⑥ (현행과 같음)</p> <p>⑦ ----- -----</p> <p>1. 2. (현행과 같음)</p> <p><u>2의2.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 또는 소각하지 아니할 것</u></p> <p>3. (현행과 같음)</p>
<p>제25조(허가취소 등) ① (생략)</p> <p>② 시·도지사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p> <p>1. ~ 6. (생략)</p> <p><u>&lt;신 설&gt;</u></p> <p>7.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를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p> <p>8. ~ 19. (생략)</p> <p>③ ~ ⑥ (생략)</p> <p>⑦ 환경부장관은 임시보관장소 및 제21조제3항에 따른 처리시설이 주변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지역 주민의 건강에 위해를 미친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할 시·도지사에게 임시보관장소의 승인 또는 건설폐기물 처리업허가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고,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권고에 따라야 한다.</p>	<p>제25조(허가취소 등)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p> <p>1. ~ 6. (현행과 같음)</p> <p><u>6의2. 제18조제2항에 따른 업무 대행자가 아닌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배출자의 건설폐기물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는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u></p> <p>7. 제18조제3항----- -----</p> <p>8. ~ 19. (현행과 같음)</p> <p>③ ~ ⑥ (현행과 같음)</p> <p>⑦ ----- ----- ----- <u>위해(危害)</u> ----- -----</p>
<p>제26조(과징금의 부과·징수 등) ① 시·도지사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제2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영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할 경우로서 그 영업정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면 그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p> <p>1. ~ 3. (생략)</p> <p>② ~ ④ (생략)</p>	<p>제26조(과징금의 부과·징수 등) ① ----- ----- <u>호(제12호는 제외한다)</u> ----- ----- <u>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u> ----- -----</p> <p>1. ~ 3. (현행과 같음)</p> <p>② ~ ④ (현행과 같음)</p>
<p>제37조(품질인증의 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품질인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품질인증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4호가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p> <p>1. ~ 3. (생략)</p> <p>4. 제35조에 따른 품질기준에 미달하거나 부적합한 제품을 생산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p>	<p>제37조(품질인증의 취소 등) ① ----- ----- ----- ----- -----</p> <p>1. ~ 3. (현행과 같음)</p> <p>4. ----- -----</p>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781호, 2017. 4. 18., 일부개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317호, 2019. 4. 16., 일부개정]
가. 사람들에게 중대한 위해(危害)를 끼치거나 시설물의 주요 구조부가 붕괴되거나 재시공이 필요하게 된 경우  나. (생략)  5. (생략)  ② (생략)	가. <del>----- 위해-----</del> -----  나. (현행과 같음)  5.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66조(과태료) ①·② (생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8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기간 내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자 또는 입력 내용의 일부를 누락하거나 입력 방법에 맞지 아니하게 입력한 자  <신설>  <신설>  2. (생략)  3.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4. ~ 8. (생략)  ④ (생략)	제66조(과태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1. <del>----- 본문, 같은 조 제2항 및 제4항-----</del> ----- -----  1의2.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을 수행하지 아니하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자신의 건설폐기물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는 업무를 대행하게 한 배출자  1의3.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을 수행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배출자의 건설폐기물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는 업무를 대행한 건설폐기물 처리업자  2. (현행과 같음)  3. 제18조제3항----- -----  4. ~ 8.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 3. 시사점

7~80년대 산업화 과정에서 신축한 수많은 건축물의 수명이 다 되어가는 현 시점에서 건설폐기물의 효율적인 재활용, 운영 및 관리를 위한 법과 제도적인 정비는 필수적인 사안이다.

이번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은 실질적인 분별해체 제도의 효과를 얻기 위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먼저 도입하고, 건설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 과정의 투명성을 입증하여 추후 민간에서도 선례를 바탕으로 올바른 분별해체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도모하는데

의의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아직은 분별해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사회적, 정책적 혜택이나 이익에 대한 명확한 구분은 없으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적 성장을 통해 분별해체 제도가 국내 건설 시장에 온건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더 나아가 끝내 건설폐기물 매립의 최소화, 제로화를 이루어 국토를 보존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담당 편집위원 : 최원영(한국건설기술연구원)